

#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 (박춘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 Tel. 031-267-9399 | www.ggwf.or.kr | 2016.06.08.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기본소득 논의,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이 될 수 있나?

##### 01 주요 내용

- 지난 6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 23%, 반대 76.9%로 부결된 것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 스위스의 기본소득은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청소년에게는 650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이르는 재원 가운데 4분의 1은 기존 사회보장비를 줄여 충당하는 방안
-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고, 특히 노동을 요구하지 않고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
  - 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등이 주도하는 신기술혁명 시대에서 직업의 형태 등의 변화를 대비할 방안으로 제시
  - 찬성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삶이 보장된다면, 인간은 좀 더 자유롭게 노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반대 의견은 이런 방식으로는 국가 재정 운용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
- 기본소득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 시작되어, 저소득·저개발 국가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파일렛 프로그램)이 주로 진행되며, 이론적 논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
-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
  - 나미비아 오미타라 지역에서 2008~2009년 2년간 지역주민 930명에게 평균 노동자 급여의 25%정도인 100나미비아달러를 매달 지급한 결과, 빈곤문제가 급격하게 개선되었고 비교용량도 같은 기간에 60%에서 45%로 감소
- 집권당 주도의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 제도는 2004년 '시민기본소득' 법률이 통과되어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재원부족의 문제로 지연
-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과도한 복지는 없애겠다는 취지로 보수 성향의 중앙정부가 주도
  - 2017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 명에게 월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후,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
- 네덜란드는 19개 지방정부가 2017년부터 개인의 경우 월 972유로(128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일을 병행할 경우 125유로(17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 이후, 알래스카영구기금\*을 조성
  -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 배당, 2002~2012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7% 증가하는 동안 1분위(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28% 증가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 발생

\*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본지 7호(2015.6.24. 일자)참고

\*석유 시추를 통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적립

- 국내의 기본소득 관련 논의는 2009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생겨나면서 본격화
  - 2018년 기준 1인당 월 30만원~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 재원마련은 기초연금, 무상보육예산, 각종 연금 등을 통합하고 총조세수입을 OECD 평균 수준인 34.1%로 올리면 가능하다는 의견
-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는 ‘불안정 노동세대’ 로 꼽히는 청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2월, 청년과 청소년 문제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가 출범
  -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특정 연령층 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취업 여부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매분기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형태를 띠
- 사회복지 학계에서도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19~24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청년 기본소득’ 을 지급하자는 정책을 제안\*
  - 정책 방향으로 ① 청년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시급을 인상(6640원) ② 청년이 고용되어 받는 임금에서 부족분을 임금보조 ③ 한 달 생활비와 최저임금 간의 차액인 30만원 가량을 ‘청년 기본소득’ 으로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
- 이 중 ‘청년 기본소득’ 방안은 청년기에만 제공되고, 적정소득의 일부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분 기본소득’ 으로 볼 수 있음
  - 19~24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12조9천억 원가량의 기본소득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19~24살 청년 기본소득 관련 정책방안 예시**

청년층 적정기본소득을 월 138만원(2014년 기준 19~24살 월평균 소비지출액)으로 가정		
<b>① 청년 최저임금 도입</b>	<b>② 청년 임금보조 수당</b>	<b>③ 부분 기본소득</b>
월 138만원 생활비용 보장 위해 시급 6640원 필요	월 138만원 생활비용 보장 위해 부족한 돈을 임금보조 방식으로 지급	월 30만원가량을 지급 (최저임금과 소비지출액의 차액)

- 기본소득 재정 확보를 위해 각종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제안하기도 함\*\*
  - 금융 파생상품 등 투기성 금융거래에 대한 중과세를 실시하고, 불로소득인 지대에 부과되는 토지세도 함께 논의, ‘부자증세’ 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법인세 인상도 제기
  - 외국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공조 과세가 논의되어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마련하자고 제안

**02 시사점**

- 기본 소득 논의는 ‘일자리 없는 저성장 시대’ 의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복지를 기본권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 사회보장과 복지를 넘어 기본소득의 논의는 구성원들의 상생과 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연대의 정신에서 출발해야하며, 구성원 간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함
- 그러나 스위스를 비롯한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누가 의제를 만들고 주도하며,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킬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중요함을 시사
  - 외국의 사례를 통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따른 의제화,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중앙/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줌
  - 각 국의 사례는 정책전략과 재원확보수단, 수급자격의 범위, 급부수준의 결정 등의 제도적 요소는 정치적·경제적 고려에 따라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

cf.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존재

\*이승윤(2016), 한국 불안정 노동시장과 사회수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 02 시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 전국 시도별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

전국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씩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지니고 있음

-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국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를 지니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지난 '04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통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
  - '13년 동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제5조)이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변경되면서 청년층 고용의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
- '15년 5월말을 기준으로 청년 고용의무 달성 기관의 비율은 공공기관 83.3%, 지방공기업 54.5%로 상대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이행률이 저조\*
  - 전국 공공기관 270곳 중 45곳, 지방공기업 121곳 중 55곳이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미달성
  - 지난 '14년과 비교하면 청년고용률이 공공기관은 1.3%, 지방공기업은 1.6% 증가하여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크게 존재
-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전국 시도 중 울산이 유일하게 100%를 달성하였고, 대전·광주는 25%로 가장 낮음
  - 시도별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울산(100.0%), 충남(75.0%), 서울(66.7%), 강원(62.5%) 순이며 대전·광주는 각 4개 기관 중 1개 기관만이 달성하여 이행률이 가장 낮음
  - 경기도의 경우 총 27개의 지방공기업 중 청년고용의무 이행기관은 15개소(55.6%)임

\*고용노동부(2015)

\*\*이행기관 수/전체 지방공기업 수

〈표 1〉 시도별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 이행률 및 청년 고용률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대전	강원	광주
이행률	55.6	66.7	40.0	50.0	75.0	25.0	62.5	25.0
청년고용률	3.1	2.7	2.8	2.9	6.1	1.6	5.3	1.1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이행률	50.0	50.0	50.0	100.0	50.0	37.5	42.9	50.0
청년고용률	6.1	10.3	11.6	6.6	4.2	1.7	2.4	2.7

- 공공부문의 경우 고용할당제를 통해 청년층 고용확대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지속적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 필요
  - 미이행 기관의 경우 정원규정 및 인건비 확보 등 재무·행정적 제약사항으로 추진에 난관
  - 또한 전체 고용시장 공급량을 확대하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은 채 청년층 취업만 촉진할 경우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풍선효과)에 유의

##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 연구」 중간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6. 17.(금) 11:00</li> <li>• 장 소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li> <li>• 내 용 : 설문조사 중간결과 및 경기도 복지의 적정기준선 제시</li> <li>• 문 의 : 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267-9364)</li> </ul>
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6. 9.(목) ~ 10.(금)</li> <li>• 장 소 : 현대종합연수원(양평)</li> <li>• 참 석 :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 150명</li> <li>• 문 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267-9333)</li> </ul>

# 03 FACT CHECK

##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적절한 청년 정책인가?

-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청년관련 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비율을 기존 3%에서 5%까지 확대하고, 민간영역까지 그 대상을 넓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이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약 25.6%는 청년고용의무제도를 미이행\*하고 있으며, 정원 확보 및 인건비 확보 등 현실적 제약 등을 이유로 제도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확대 시행에 있어, 청년이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과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인가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저학력 청년노동력 확보를 통해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심의 청년의무고용으로 실업률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움
  - 한국과 같이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많은 경우에는 효과보다는 사회적 손실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기업 중심의 청년의무할당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음
  -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모델인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은 제도 도입 후 청년실업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시행 후 3년 만에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청년 실업률 감소 정책으로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정책 비판을 받음
-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단기적인 청년고용률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고용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은수미 의원실 자료(2015)

# 04 통계로 보는 복지

## 청년 실업률



자료 : OECD(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중) (우)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15~29세) 가운데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 비중이 15.6%로 OECD국 33개국 중 3번째로 높음
  - OECD 회원국의 평균인 8.2%에 비해 7.4%포인트 높은 것으로, 한국보다 니트족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24.9%)와 멕시코(18.5%) 뿐
- 청년 실업률도 매년 증가하여 올해 4월 기준 10.9% 수준이며, 학력별로 대졸자가 51%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

\*단위: %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